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및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등〉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77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50호)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3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77호) ..... | 1  |
|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50호) ..... | 2  |
| 3.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31호) ..... | 3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5  |
| 1.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등 .....        | 5  |
| 가. 개정안의 내용 .....                   | 5  |
| 나. 검토의견 .....                      | 10 |
| 다. 관계 기관 의견 .....                  | 26 |
| 2.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       | 28 |
| 가. 개정안의 내용 .....                   | 28 |
| 나. 검토의견 .....                      | 30 |
| 다. 관계 기관 의견 .....                  | 35 |



## I. 개요

###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677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3. 23.
- (3) 회 부 일 : 2026. 3. 24.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 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2.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50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25.
- (3) 회 부 일 : 2026. 3. 26.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 3.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331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14.

(3) 회 부 일 : 2026. 4. 15.

####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복무를 마친 날,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겨 사후 급여 지원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3조 원,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신기간과 초기 양육기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약 9개월의 임신기간과 최대 12개월 또는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 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1)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 2)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자녀 한 명 당 9개월을 상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 3)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 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각 개정안은 군복무·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시점을 각각 앞당기려는 것임.

(군복무크레딧) 각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군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면서, 그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려는 것임.

(출산크레딧) 김미애의원안·김남희의원안은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각각 ‘자녀를 출산한 날’ 또는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기려는 것으로, 김남희의원안은 첫째·둘째 자녀에 대하여 각 21개월씩과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당 27개월씩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현 행                         | 김미애의원안                      | 남인순의원안                      | 김남희의원안                      |
|-----------------------------|-----------------------------|-----------------------------|-----------------------------|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① 다음 각 호의                   | ① -----                     | ① -----                     | ① -----                     |

| 현행                                                                                                                                                                                 | 김미애의원안                                                                                  | 남인순의원안                                                                                  | 김남희의원안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복무를 마친 경우<br>복무를 마친 날<br>(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br>그 복무기간----- | -----복무를 마친 경우<br>복무를 마친 날<br>(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br>그 복무기간----- | -----복무를 마친 경우<br>복무를 마친 날<br>(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br>그 복무기간을----- |
| 1. ~ 4.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② -----                                                                                 | ② -----                                                                                  |

| 현행                                                                                                                                                                                                                                                                              | 김미애의원안                                                                                                                                                                                                             | 남인순의원안                                                                                                                                                                                                                                                                                                                                    | 김남희의원안                                                                                                                                                                                                                                                                                                                                    |
|---------------------------------------------------------------------------------------------------------------------------------------------------------------------------------------------------------------------------------------------------------------------------------|--------------------------------------------------------------------------------------------------------------------------------------------------------------------------------------------------------------------|-------------------------------------------------------------------------------------------------------------------------------------------------------------------------------------------------------------------------------------------------------------------------------------------------------------------------------------------|-------------------------------------------------------------------------------------------------------------------------------------------------------------------------------------------------------------------------------------------------------------------------------------------------------------------------------------------|
|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u>산입된</u>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u>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p> <p>1. 자녀가 2명</p> | <p>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한 날(자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u>-----</p> <p>-----</p> <p>-----</p> <p>-----</p> <p>-----</p> <p>-----</p> <p>1. 2. (현행과</p> | <p>-----</p> <p>-----</p> <p>-----<u>산입되는</u>-----</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u>-----</p> <p>-----</p> <p>-----</p> <p>-----</p> <p>-----</p> <p>-----</p> <p>1. -----</p> | <p>-----</p> <p>-----</p> <p>-----<u>산입되는</u>-----</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때에는 그 자녀를 얻은 날(자녀를 얻은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u>-----</p> <p>-----</p> <p>-----</p> <p>-----</p> <p>-----</p> <p>-----</p> <p>1. -----</p> |

| 현행                                                                                                                                                                                                                                                                                                                                                 | 김미애의원안                                                                                       | 남인순의원안                                                               | 김남희의원안                                                                                                                                                                                                                                                                                                                                                                        |
|----------------------------------------------------------------------------------------------------------------------------------------------------------------------------------------------------------------------------------------------------------------------------------------------------------------------------------------------------|----------------------------------------------------------------------------------------------|----------------------------------------------------------------------|-------------------------------------------------------------------------------------------------------------------------------------------------------------------------------------------------------------------------------------------------------------------------------------------------------------------------------------------------------------------------------|
| <p>이하인 경우 :<br/>자녀 1명마다<br/><u>12개월</u>을 더한<br/>개월 수</p> <p>2. 자녀가 3명<br/>이상인 경우 :<br/>첫째 및 둘째<br/>자녀에 대하여<br/>인정되는 <u>24개</u><br/><u>월</u>에 2자녀를<br/>초과하는 자녀<br/>1명마다 <u>18개</u><br/><u>월</u>을 더한 개<br/>월 수</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br/>가입기간을 추가<br/>로 산입하는데<br/>필요한 재원은<br/>국가가 <u>전부</u> 또<br/><u>는 일부를</u> 부담<br/>한다.</p> <p>④ (생략)</p> | <p>같음)</p> <p>② ~ ④ (현행<br/>과 같음)</p> <p>부 칙<br/>제1조(시행일) 이<br/>법은 2027년 1월<br/>1일부터 시행한</p> | <p>남인순의원안</p> <p>부 칙<br/>제1조(시행일) 이<br/>법은 2027년 1월<br/>1일부터 시행한</p> | <p>김남희의원안</p> <p>-----<br/>-----<br/><u>21개월</u>-----<br/>-----<br/>2. -----<br/>-----<br/>-----<br/>-----<u>42개</u><br/><u>월</u>-----<br/>-----<br/>-----<u>27개</u><br/><u>월</u>-----<br/>-----<br/>② (현행과 같<br/>음)<br/>③ -----<br/>-----<br/>-----<br/>-----<u>전부</u>-----<br/>-----<br/>-----.<br/>④ (현행과 같<br/>음)<br/>부 칙<br/>제1조(시행일) 이<br/>법은 2027년 1월<br/>1일부터 시행한</p> |

| 현<br>행 | 김미애의원안                                                                                                                                                                                       | 남인순의원안                                                                                                        | 김남희의원안                                                                                                                                                                                                  |
|--------|----------------------------------------------------------------------------------------------------------------------------------------------------------------------------------------------|---------------------------------------------------------------------------------------------------------------|---------------------------------------------------------------------------------------------------------------------------------------------------------------------------------------------------------|
|        | <p>다.</p> <p>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 <p>다.</p> <p>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 <p>다.</p> <p>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p> |

## 나. 검토의견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하여 각각 가입 기간에 일정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주는 군복무·출산크레딧은 2007년 7월 법률 제8541호로 공포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도입되었음.<sup>1)</sup>

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2007. 7. 23. 전부개정, 2008. 1. 1. 본조시행>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라 복무기간에 산입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 다만, 당해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부칙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

□ 당초에는 현역병 등의 군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주고 (군복무크레딧),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12개월’을,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되,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음(출산크레딧).

□ 그런데,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2025년 4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군복무·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이 함께 강화되었음(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sup>2)</sup>

너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

- **군복무크레딧**은 현역병 등의 군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그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게 되었고,<sup>3)</sup> **출산크레딧**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첫째 자녀(12개월)’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면서 상한(50개월)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었음.

□ 각 개정안은 현역병 등의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복무기간 전부가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하면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김미애의원안·김남희의원안)에 따른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앞당기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고,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자녀 출산·양육으로 가입 이력을 쌓지 못한 기간을 보충함으로써 군복무와 출산이 노후소득 보장성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드는

---

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2.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각 크레딧의 효능감을 단기에 가시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군복무·출산크레딧: 현행 vs. 개정안 >

| 구 분                  |              | 현 행                               | 개정안          |            |             |
|----------------------|--------------|-----------------------------------|--------------|------------|-------------|
|                      |              |                                   | 김미애<br>의원안   | 남인순<br>의원안 | 김남희<br>의원안  |
| 군복무<br>크레딧<br>(\$18) | 산입 기간        | 최대 12개월<br>(군 복무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 | 군 복무기간 전체    |            |             |
|                      | 산입 시점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 군 복무를 마친 날   |            |             |
| 출 산<br>크레딧<br>(\$19) | 산입<br>기간     | 첫째                                | 12개월         | -          | 21개월        |
|                      |              | 둘째                                | 12개월         |            | 21개월        |
|                      |              | 셋째<br>이상                          | 자녀당 18개월     |            | 자녀당<br>27개월 |
|                      | 산입 시점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 자녀를<br>출산한 날 |            | 자녀를<br>얻은 날 |
|                      | 국가의<br>비용 부담 | 전부 또는 일부                          | 전부 또는<br>일부  |            | 전부          |

□ 다만, 각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각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이 각각 앞당겨지게 되면, 그 가입 기간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날’이 아닌 ‘군복무를 마친 날’이나 ‘자녀를 출산한 날’ 또는 ‘자녀를 얻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현행법에서는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전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하 “A값”이라 한다.

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각각 ‘A값의 50%’와 ‘A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sup>4)</sup>

‘군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 또는 ‘자녀를 얻은 날’에는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A값은 산출될 수 없으므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면 현행법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삭제하는 대신 각각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방법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각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이 각각 앞당겨지게 되면, 그 기간을 현행법 제49조<sup>5)</sup> 각 호의 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할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5)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가운데 63세(2026년 기준)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의 산정에는 군복무·출산크레딧이 원칙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

- 참고로, 장애연금의 수급권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이어야 발생하므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이 이루어지는 군복무·출산크레딧은 장애연금에 미반영되고,<sup>6)</sup>

유족연금은 그 수급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망인(亡人)이 노령연금 수급권자<sup>7)</sup>로서 생전에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유족연금액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현행법 제74조<sup>8)</sup> 각 호의 가입기간에만 군복무·출산크레딧을 반영하고 있으며,

6) 「국민연금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7)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8)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할 때까지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되는 급여로서 군복무·출산크레딧이 반영되지 아니함.<sup>9)</sup>

그런데, 각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면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업크레딧<sup>10)</sup>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유족연금액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반영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실업크레딧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의 기본연금액 계산에는 반영하지만, 장애·유족연금의 기본연금액 계산에는 반영하지 아니하되, 유족연금액의 지급률을 결정하는 가입기간과 반환일시금 산정에는 반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 실업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소득액 상한(70만원)<sup>11)</sup> 등을 이유로 장애·유족

9)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10)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④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11)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제3조(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소득의 상한선은 70만원, 하한선은

연금액을 낮추는 불리한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셋째,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 시작이나 종료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 부칙의 군복무크레딧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김미애의원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인순의원안·김남희의원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법」 제72조제1항12)에서는 현역·예비역·보충역인 병(兵)의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미애의원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40세가 되는 사람’부터 제1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하면서,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병역준비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남인순의원안 부칙 제2조에 규정된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시점이 ‘18세가 된 때’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sup>13)</sup>

---

영 제5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12)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13)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병역법」상의 관련 용어와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sup>14)</su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복무크레딧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시작’이 병역준비역 편입(18세)이나 예비역·보충역으로서 병력동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경우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병역처분 변경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병역의무 수행에 관련된 제도<sup>15)</su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넷째, 그간의 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려는 안 제19조에 관한 적용례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이상 자녀부터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는 내용의 출산크레딧<sup>16)</sup>을 도입한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14)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부칙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15) 「병역법」

제31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족의 간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난이나 그 밖의 가사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6)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자녀당 18개월씩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되, 출산크레딧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은 총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부칙 제19조에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그 자녀의 출생순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얻은 자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sup>17)</sup>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함으로써 그 보장성을 강화한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2026년 1월 1일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50개월 상한’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였음.<sup>18)</sup>

그런데, 각 개정안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거나 출산·입양한 사람’부터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이 법 시행 이후 얻거나 출산·입양한 자녀’에 한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지 또는 ②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거나 출산·입양한 경우’라면 ‘이 법 시행 전에 얻거나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도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17)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2007. 7. 23. 공포 2007. 7. 23. 시행>

부칙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8)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부칙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후자(②)로 해석된다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얻은 경우에만 그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기로 한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앞당기는 데 따른 수혜 범위를 확장하여야 할 필요성과 기존 출산크레딧 적용 관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19조에 관한 적용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전에 첫째 자녀를 얻고,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얻은 甲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12개월)와 셋째 자녀(18개월)에 대하여만 총 30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각 개정안의 부칙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거나 출산·입양한 경우’라면 ‘이 법 시행 전에 얻거나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도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각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 외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섯째, 현행 출산크레딧은 「민법」에 따른 친생자 외에도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등에 대하여도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출산크레딧의 적용을 위한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뿐 아니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9)</sup>

그런데, 김미애의원안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기면서 그 시점을 ‘자녀를 출산한 날’로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로 제1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어 출산 외의 방법으로 자녀를 얻은 경우를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김남희의원안을 참고하여 ‘자녀를 출산한 때’와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를 각각 ‘자녀를 얻은 때’와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출산 외의 방법으로 얻은 자녀에 대하여도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의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여섯째, 군복무·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확대하면서 그 산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개정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19)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급여의 사후 지원방식’에 따르는 경우보다 군 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얻은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연금보험료의 사전 지원방식’에 의하는 경우 2093년까지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지출 소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자료: 보건복지부),

해당 자료의 추계기간이 2026년부터 2093년까지로 한정되어 그 이후 계속 생존하는 수급권자를 반영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있으므로 공정·정확한 비교가 제한되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각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각 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길 경우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각각 연평균 최대 약 6,554억원(군복무크레딧)과 약 1조 8,790억원(출산크레딧)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단기간 내 증대될 수 있는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크레딧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단기간 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논의된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군복무·출산크레딧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에 따른 비용 전망 >

(단위: 조원, '25년 기준 불변가격)

| 구분         | ① 급여의 사후<br>지원방식(현행) | ② 연금보험료의<br>사전 지원방식(개정안) | 차이 (② - ①) |
|------------|----------------------|--------------------------|------------|
| 군복무<br>크레딧 | 99.1                 | 96.2                     | △2.9       |
| 출산<br>크레딧  | 161.1                | 154.0                    | △7.1       |

주 1)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재정추계를 토대로 작성(※ 추계기간: 2026~2093년)

2)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은 각각 13%·43%로 하고, 할인율은 2% 반영

3) 출산크레딧 비용은 일반회계(30%)와 국민연금기금(70%)이 분담하는 것으로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 < 각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 >

(단위: 억원)

| 구분         | 개정안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연평균    |
|------------|--------|--------|--------|--------|--------|--------|--------|--------|
| 군복무<br>크레딧 | 김미애의원안 | 2,331  | 6,933  | 7,104  | 7,685  | 8,716  | 32,768 | 6,554  |
|            | 남인순의원안 | -      | -      | 2,689  | 7,945  | 8,129  | 18,763 | 6,254  |
|            | 김남희의원안 | -      | -      | 2,689  | 7,945  | 8,129  | 18,763 | 6,254  |
| 출산<br>크레딧  | 김미애의원안 | 8,778  | 10,012 | 11,335 | 12,729 | 14,177 | 57,029 | 11,406 |
|            | 김남희의원안 | 14,367 | 16,506 | 18,674 | 20,974 | 23,428 | 93,948 | 18,790 |

주: 남인순의원안·김남희의원안의 군복무크레딧 보장성 강화 관련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부터 2031년까지 3년간의 평균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일곱째, 김남희의원안은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를 국가(일반회계)가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출산크레딧 도입 당시 고려된 ‘출산 장려’의 취지와 그 목적 달성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일반회계)의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령에는 출산크레딧 관련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간 비용 분담률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정부 내부 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부담률을 30%로 설정하여 국가재정을 운용하여왔는데, 출산크레딧 도입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이 고려된 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용을 전부 국가(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출산 장려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국가의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sup>20)</sup>

□ 참고로, 2026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 대하여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한편, 군복무·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내용 등으로 주호영 의원(의안번호 제4625호), 한지아의원(의안번호 제8591호), 위성곤 의원(의안번호 제9304호), 백선희의원(의안번호 제10576호), 이수진

20)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의원(의안번호 제11651호),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13352호),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13978호) 및 김태선의원(의안번호 제16470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각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군복무·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등 관련 법률안 계류 현황 >

| 연번 | 의안번호<br>(대표발의)     | 발의일자         | 군복무크레딧(§18)  |                 |                    | 출산크레딧(§19) |      |                  |                    |                |
|----|--------------------|--------------|--------------|-----------------|--------------------|------------|------|------------------|--------------------|----------------|
|    |                    |              | 산입<br>기간     | 최저<br>요건        | 산입<br>시점           | 산입기간       |      |                  | 산입<br>시점           | 국가<br>부담       |
|    |                    |              |              |                 |                    | 첫째         | 둘째   | 셋째 <sup>이상</sup> |                    |                |
| 현행 |                    |              | 최대<br>12개월   | 6개월<br>이상<br>복무 | 노령연금<br>수급권<br>취득시 | 12개월       | 12개월 | 자녀당<br>18개월      | 노령연금<br>수급권<br>취득시 | 전부<br>또는<br>일부 |
| 1  | 2204625<br>(주호영의원) | '24. 10. 08. | 복무기간         | 삭제              | 현행                 | 현행         | 현행   | 자녀당<br>12개월      | 현행                 | 현행             |
| 2  | 2208591<br>(한지아의원) | '25. 02. 28. | 병역의무<br>수행기간 | 삭제              | 병역의무<br>마친 날       | 현행         | 현행   | 자녀당<br>12개월      | 출산시                | 현행             |
| 3  | 2209304<br>(위성곤의원) | '25. 03. 24. | 병역의무<br>수행기간 | 삭제              | 현행                 | 24개월       | 18개월 | 현행               | 자녀를<br>얻은 날        | 현행             |
| 4  | 2210576<br>(백선힌의원) | '25. 05. 22. | 18개월         | 삭제              | 현행                 | -          | -    | -                | -                  | -              |
| 5  | 2211651<br>(이수진의원) | '25. 07. 23. | 복무기간         | 현행              | 현행                 | -          | -    | -                | -                  | -              |
| 6  | 2213352<br>(김선민의원) | '25. 09. 29. | 복무기간         | 현행              | 복무를<br>마친 날        | 현행         | 현행   | 현행               | 출산시                | 전부             |
| 7  | 2213978<br>(남인순의원) | '25. 11. 06. | -            | -               | -                  | 현행         | 현행   | 현행               | 출산<br>또는<br>입양시    | 전부             |
| 8  | 2216470<br>(김태선의원) | '26. 01. 30. | 복무기간         | 현행              | 현행                 | -          | -    | -                | -                  | -              |
| 9  | 2217677<br>(김미영의원) | '26. 03. 23. | 복무기간         | 삭제              | 복무를<br>마친 날        | 현행         | 현행   | 현행               | 출산시                | 현행             |
| 10 | 2217750<br>(남인순의원) | '26. 03. 25. | 복무기간         | 삭제              | 복무를<br>마친 날        | -          | -    | -                | -                  | -              |
| 11 | 2218331<br>(김미영의원) | '26. 04. 14. | 복무기간         | 삭제              | 복무를<br>마친 날        | 21개월       | 21개월 | 27개월             | 자녀를<br>얻은 날        | 전부             |

주: 주호영의원안(의안번호 제4625호)·한지아의원안(의안번호 제8591호)은 군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3. 20.)에서 가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9191호)이 제출되기 전에 발의되었음.

## 다. 관계 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 (군복무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확대) 군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보상과 병역의무 수행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군복무 크레딧을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출산크레딧: 인정기간 확대) 2026년부터 출산크레딧 인정기간이 확대 시행 중이므로, 추가 확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군복무·출산크레딧: 사전지원) 군복무·출산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세대가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당장의 국고 부담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

### □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 군복무·출산크레딧을 사전적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사후적 급여 지원방식과 동일하지만, 당장의 재정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저소득층·일자리 지원 등 보다 시급한 사안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이 구축될 우려가 있고, 정부가 빚을 내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적립·투자를 돕는 결과로 국가 전체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사전적 보험료 지원방식의 경우에도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을 결국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

- (병무청)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나 현역병의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예비역·보충역으로서 병력동원이나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경우 그 기간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남인순의원안 부칙 제2조에 규정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의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아울러 남인순의원안 부칙 제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현역병·전환복무·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또는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라면,

-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소집된 경우, ② 이 법 시행일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으나 이 법 시행 이후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③ 이 법 시행일 전에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보건수의사로 소집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 이후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또는 소집된 경우 등에 대하여 평등원칙과 형평성 차원에서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 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도입

### 가. 개정안의 내용

- 김남희의원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sup>21)</sup>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 현 행   | 김남희의원안                                                                                                                                                        |
|-------|---------------------------------------------------------------------------------------------------------------------------------------------------------------|
| <신 설> | 제100조의5(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가입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 |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김남희의원안                                                                                                                                                                                                                                                                                                                         |
|--------------------------------|--------------------------------------------------------------------------------------------------------------------------------------------------------------------------------------------------------------------------------------------------------------------------------------------------------------------------------|
|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br>(생략) | <p>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br/>(현행 제100조의5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4조(육아휴직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을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로 본다.</p> |

## 나. 검토의견

□ 육아휴직 중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서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육아휴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없음.<sup>22)</sup>

- 참고로,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외한다)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이

### 22)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을 뺀 소득

육아휴직 직전에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이면 그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반액씩을 사용자(부담금)와 근로자(기여금)가 각각 부담하여야 함.<sup>23)</sup>

□ 그런데,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비례하게끔 설계되어 있는바,<sup>24)</sup>

육아휴직 중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데 따른 기여이력 상실로 해당 육아휴직자의 노후소득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육아휴직자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중에 내지 아니하였던 연금보험료를 복직 후 등 본인이 원하는 때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sup>25)</sup>

---

23) 예컨대 A사 소속 근로자인 甲의 육아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이고, A사가 육아휴직 중인 甲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에 육아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인 18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A사의 사업주)와 근로자(甲)는 각각 18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2026년도 보험료를 9.5% 적용 시 171,000원)의 반액씩을 납부하여야 함.

24)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63조(노령연금액)**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본연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연평균 약 18.7만명) 대비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한 인원(연평균 약 1,547명)은 약 0.83%에 불과하여 이들의 기여이력 상실분이 보충되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최근 7년간 육아휴직자 중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신청 인원 >**

(단위: 명, %)

| 구 분    | 육아휴직<br>납부예외자 (A) | 추후 납부<br>신청 인원 (B) | 비율 (B/A) |
|--------|-------------------|--------------------|----------|
| 7개년 평균 | 187,053           | 1,547              | 0.83     |
| 2019   | 164,472           | 678                | 0.41     |
| 2020   | 175,852           | 2,257              | 1.28     |
| 2021   | 181,388           | 1,866              | 0.03     |
| 2022   | 202,257           | 1,040              | 0.51     |
| 2023   | 210,677           | 602                | 0.29     |
| 2024   | 223,898           | 942                | 0.42     |
| 2025   | 150,829           | 3,441              | 2.28     |

자료: 국민연금공단

- 이에 김남희의원안은 육아휴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가입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25)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 다만, 김남희의원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육아휴직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sup>26)</sup>(사업장가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써, 지역가입자<sup>27)</sup>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김남희의원안은 연금보험료 반액에 해당하는 ‘기여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나머지 반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누가 어떻게 납부하도록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부담금’과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인 ‘기여금’으로 구성되는데,<sup>28)</sup>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육아휴직은 여전히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 의무자인 사용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를 신청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것으로 보임.

그런데, 김남희의원안에서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만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반액인 ‘부담금’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7)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28)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김남희의원안이 육아휴직 중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납부 의무자인 사용자가 계속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라면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사유를 함께 정비하는 등 연금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셋째, 김남희의원안 제100조의5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재정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통상임금액을 육아휴직자의 기준소득 월액으로 가정하여 김남희의원안 제100조의5에 따라 국가가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게 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5,763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김남희의원안 제100조의5(육아휴직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

| 구 분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연평균   |
|-------------------|-----------|-----------|-----------|-----------|-----------|--------|-------|
| 추가재정소요<br>(억원)    | 3,976     | 4,728     | 5,611     | 6,645     | 7,857     | 28,817 | 5,763 |
| 연간 지원<br>개월 수(개월) | 2,049,820 | 2,202,141 | 2,365,781 | 2,541,580 | 2,730,443 | -      | -     |
| 평균 통상<br>임금액(백만원) | 3.7       | 3.9       | 4.1       | 4.4       | 4.6       | -      | -     |
| 보험료율(%)           | 10.5      | 11.0      | 11.5      | 12.0      | 12.5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김남희의원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가 육아휴직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박희승의원(의안번호 제10965호) 및 이수진의원(의안번호 제11651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 관계 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사업장 여건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 및 재정 소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소득감소 보전을 위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그 규모를 크게 확대한바<sup>29)</sup> 국민연금에서 별도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육아휴직급여체계의 틀 내에서 급여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과 중복적으로 지원될 소지가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29)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고용안정장려금 규모: ('24) 2.7조원 → ('25) 4.4조원 → ('26) 4.5조원(자료: 기획예산처)

- 아울러 육아휴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임금근로자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은 대기업·공공기관 등 고용 안정성이 높은 근로자에 편중되어 있으므로,<sup>30)</sup> 개정안에 따라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정부는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2026년 기준 약 70조원 의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sup>31)</sup> 연평균 약 3~4천억원 규모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는 대규모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신설은 한정된 국가재정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30) 육아휴직자 소속 사업체 규모('24년): 4인 이하 18.8% vs. 300인 이상 37.4%(자료: 기획예산처)

31) 저출생 대응 예산: ('25) 62.6조원 → ('26) 70.4조원(자료: 기획예산처)